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03월 6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03월 16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4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03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체육과장)

가. 제안이유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절차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개정하여 지원대상 명확화

(안 제2조제2호)

나. 지원대상자의 보호자가 통학택시비를 지원을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개정

(안 제4조 제1호)

다.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4조제2호)

- 라.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과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안 제5조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 절차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 주요개정 내용은

“통학비 지원대상을 고등학생으로 명확화”하고

기존의 “읍·면장 신청에서 군수에게 신청”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신청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p> <p>3. (생 략)</p> <p>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실질적으로 통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월 20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해야 한다.</p> <p>제5조(지원방법) ①·② (생 략) <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u>고등학교</u>----- -----.</p> <p>3.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신청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u>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u></p> <p>제5조(지원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